

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청소행정과)

의안번호	제251호
제 출 자	권영애 의원 외 13명(2024. 2. 1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및 소규모 구매와 배달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,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추진계획의 수립을 매년으로 규정(안 제4조)
- 나.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(안 제7조)
- 다.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항 신설(안 제10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2. 2. ~ 2024. 2. 6.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‘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 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’ (대표 정윤주 의원)의 활동 결과에 따라 권영애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,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및 배달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‘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’를 ‘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’로 개정하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‘실시할 수 있으며’를 ‘실시해야 하며’로 임의 조항에서 강행 조항으로 강화 시켰음.
- 안 제10조의2¹⁾를 신설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
1) 제10조의2(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)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,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